

# 『전기자동차 폐차 절차』

## ① 전기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1) 道 저탄소정책과로, 의무사용기간 내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
  - 전기차 폐차 시 필요한 서류(아래 참고) 지참 후, 道 저탄소정책과 방문
  - 검토 후, 道 ‘의무사용기간 내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알림’ 발급
- 2) 제주도내 모든 폐차장에서 전기차 폐차 가능

전기차 소유자	전기차 이동 → <b>폐차 승인서** 제출</b> →	도내 폐차장 (말소 대행업체 등)	전기차 배터리 반납 →	제주 테크노파크
자동차 등록사무소 (차량 말소)	← 배터리 반납증명서* ← 폐차 인수 증명서 ※ 폐차장에서 말소 업무 대행		← 배터리 반납증명서* 발급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 증명서(제주테크노파크 발급)

\*\* 의무사용기간 내 전기자동차 폐차승인 알림(道 발급)

의무운행기간(2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27개월 미만
보조금 환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② 전기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제주도내 모든 폐차장에서 전기차 폐차 가능

전기차 소유자	전기차 이동 →	도내 폐차장 (말소 대행업체 등)	전기차 배터리 반납 →	제주 테크노파크
자동차 등록사무소 (차량 말소)	← 배터리 반납증명서* ← 폐차 인수 증명서 ※ 폐차장에서 말소 업무 대행		← 배터리 반납증명서* 발급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 증명서(제주테크노파크 발급)

# < 전기자동차 폐차 시, 제출 서류 >

※ 전기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지참 후, 道 저탄소정책과 제출)

- ① 전기자동차 의무사용기간 내 폐차승인 요청서 <서식 1>
- ② 세외 수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2>
- ③ 사고경위서 <서식 3> ※ 별도 양식 가능
- ④ 자동차 등록증
- 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경찰 출동 시)
- ⑥ 보험회사 사고확인 사실서
- ⑦ 보험수리비(또는 수리비 견적서)
- ⑧ 사고차량 현장사진(전·후·좌·우) <서식 4> ※ 별도 양식 가능

## □ 의무 준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 1.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을 구매자에게 인계 ※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2.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참고

### 3. 전기차 매매제한 (도민, 도내기업 법인)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도내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주도내에서 양도·양수(매매) 가능
  - 도외 반출 시 <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 환수 조치

# 전기자동차 폐차승인 요청서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연락처	
차명				최초등록일	
주소					
폐차사유					
첨부서류	1. 피해자 사고경위서, 2. 자동차등록증, 3.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 출동 시) 4. 보험회사 사고확인 사실서, 5. 보험수리비(또는 수리비 견적서) 6. 사고차량 현장사진(앞·뒤·좌·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금액 중 사용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및 환수 절차, 배터리 반납·회수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전기차 배터리 회수·반납 대행 기관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배터리 회수·반납 대행기관 등)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반납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환수 등을 위한 자료 관리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사고 차량 현장 사진

앞	뒤
좌	우